

기업구매자금 결제제도 이용 약정서(기업용)

- 판매기업용 -

본인확인 및 인감대조	담 당	책임자	관리자	부점장

주식회사 하나은행 앞

본인은 주식회사 하나은행(이하 "은행"이라 합니다)과 본인의 판매대금 추심을 위한 기업구매자금 결제제도 이용약정을 함에 있어 기업간전자상거래서비스이용약관 및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이 적용됨을 승인하고, 다음과 같이 약정을 체결합니다.

제 1 조 (용어의 정의)

- ① "기업구매자금어음"이라 함은 구매기업에게 재화 및 용역을 판매한 판매기업이 그 판매대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구매기업을 지급인으로 하여 발행한 환어음과 전자적인 수단으로 전송한 판매대금추심의뢰서를 말합니다.
- ② "인수"라 함은 제시된 기업구매자금어음을 지급할 것을 구매기업이 승인하는 것을 말합니다.
- ③ "인수거절"이라 함은 제시된 기업구매자금어음의 지급을 구매기업이 거절하는 것을 말합니다.
- ④ "결제기준일"이라 함은 제시된 기업구매자금어음을 결제하기 위한 기준일이며 구매기업은 이날까지 구매자금대출을 실행하거나 자기자금으로 결제계좌에 결제대금을 입금하여야 합니다.
- ⑤ "MarketPlace(이하 "MP"라 합니다)"라 함은 구매기업과 판매기업간 전자상거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온라인시장(e-Marketplace)을 운영하는 사업장등록증을 보유한 기업 또는 시장을 말합니다.
- ⑥ "구매자금결제제도"라 함은 판매기업은 구매기업 앞으로 기업구매자금어음을 발행하여 추심의뢰하고 구매기업은 제시된 기업구매자금어음을 인수 및 자금결제하여 구매대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.
- ⑦ "일괄구매자금결제제도(구매기업중심)"이라 함은 판매기업의 추심행위를 구매기업이 대행하여 기업구매자금어음 내역을 은행으로 전송한 후 자동으로 인수 및 자금결제하여 구매대금을 결제하는 제도를 말합니다.
- ⑧ "역구매자금결제제도(판매기업중심)"라 함은 판매기업이 추심의뢰 후 구매기업을 대리하여 인수 및 구매기업명의 구매자금대출을 실행하여 판매대금을 회수하는 제도를 말합니다.
- ⑨ "B2B구매자금결제제도"라 함은 매매계약의 체결 및 판매대금의 추심행위가 MP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구매자금결제제도를 말하며, 매매계약 접수와 동시에 자동으로 인수 및 구매기업명의 대출이 실행되어 구매대금을 결제하는 "자동승인방식"과 구매기업의 인수 및 대출실행후에 구매대금을 결제하는 "지급승인방식" 및 "접수방식"이 있으며, 전자상거래매매계약서에 승인방식을 지정하여 MP가 은행으로 통지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.
- ⑩ "전자상거래매매계약서"라 함은 구매기업과 판매기업이 MP에서 체결한 거래품목의 수량, 단가, 공급가액 등 세금계산서정보와 결제수단, 결제예정금액, 만기일, 지급승인방식 등의 대금결제정보가 포함된 매매계약서를 말하며 판매대금추심의뢰서를 겸합니다.
- ⑪ "인터넷뱅킹"이라 함은 하나은행이 운영하는 기업뱅킹, HanaCBS, BICNET, 개인인터넷뱅킹, FirmBanking 등 전자적인 수단을 말합니다.

제 2 조 (이용시간)

- ① 은행은 이용시간을 은행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합니다.
- ② 이용시간은 은행의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, 이용시간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개월전 은행 본점 및 영업점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합니다. 다만, 시스템 장애로 인한 복구, 긴급한 프로그램 보수, 천재지변등 불가항력으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.

제 3 조 (추심관련 서류의 제출)

본인은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은행에 판매대금 추심을 의뢰하기로 합니다.

- ① 제출서류
 1. 기업구매자금어음 (환어음 및 판매대금추심의뢰서)
 2. 세금계산서 원본 (세금계산서 발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추심의뢰 하여야 함)
 3. 기타 은행이 요청하는 서류
- ② 인터넷뱅킹 등을 이용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전항의 서류(환어음을 제외합니다)를 전자적 형태로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으며, 아래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하기로 합니다.
 1. 일괄구매자금결제제도(구매기업중심) : 본인이 발행한 세금계산서 내역을 근거로 구매기업이 구매내역을 일괄적으로 작성하여 은행으로 전송하는 경우에는 구매기업이 본인을 대리하여 추심의뢰 한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하기로 합니다.
 2. B2B구매자금결제제도 : 본인이 MP에서 구매기업과 체결한 전자상거래매매계약서를 MP를 통해 은행이 전송 받는 경우에는 본인이 추심의뢰 한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하기로 합니다.



제 4 조 (수수료 등)

판매대금 추심을 의뢰하거나 B2B구매자금결제제도 이용시 전자상거래매매계약서상에 수수료 부담주체로 지정되었을 경우에는 소정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하며, 은행은 수수료 징구방법 및 대상, 시기, 금액 등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기로 하며,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개월전 은행 본점 및 영업점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하기로 합니다.

제 5 조 (통지)

- ① 은행은 일괄구매자금결제제도(구매기업중심)를 이용하는 경우나 B2B구매자금결제제도를 이용하는 경우에 추심의뢰내역을 인터넷뱅킹 사이트에서 조회할 수 있도록 게시하는 것으로 본인에 대한 통지에 갈음하기로 합니다.
- ② 은행은 구매기업 또는 구매기업의 거래은행으로부터 인수거절, 부도, 미결제등의 통지를 접수한 때에는 인터넷뱅킹 사이트에서 조회할 수 있도록 게시하는 것으로 통지에 갈음하며, 보조적인 수단으로 담당자정보에 기재된 전화번호로 우선통지하기로 합니다.

제 6 조 (판매대금 입금계좌 지정)

- ① 본 약정에 의한 판매대금 입금계좌는 다음계좌로 지정하기로 합니다.

예금주	실명확인번호	계좌번호

- ② 전항의 입금계좌는 은행내에 개설된 본인명의의 계좌에 한하여 지정하기로 합니다.

제 7 조 (약정의 해지 등)

가공의 매출, 추심의뢰내역 또는 세금계산서자료의 허위·오류제출 등의 사유로 지속거래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은행은 약정을 제한하거나 해지할 수 있기로 합니다.

제 8 조 (정보제공 동의)

본인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의 해당 정보를 관련 당사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

- 1. B2B구매자금결제제도를 이용하는 경우에 전자상거래계약의 성립 및 자금결제를 위해 필요한 다음의 정보를 은행이 MP에게 제공
 - 가. 본인의 구매자금대출한도 및 대출잔액, 연체정보 등
 - 나. 신용정보관리규약상 본인에 관한 '연체 등' 정보(연체, 대위변제, 대지급, 부도, 관련인 정보 등)
- 2. 일괄구매자금결제제도(구매기업중심)를 이용하는 경우에 본인의 기업구매자금결제제도 이용정보 및 판매대금 추심의뢰내역 등을 구매기업에게 제공

제 9 조 (손실부담 및 면책)

- ① 다음 각호의 사유로 말미암아 본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은행은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본인이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.
 - 1. 제5조에 의해 통지한 추심내역을 확인하지 아니하거나 지연됨으로써 발생하는 손해
 - 2. 제5조에 의해 지급거절내역을 통지하였으나 본인의 확인지연, 담당자 전화번호 변경, 통화불능 등의 사유로 발생하는 손해
 - 3. 판매대금 입금계좌의 거래정지, 계좌이상 등의 사유로 입금불능이나 입금지연됨으로써 발생하는 손해
 - 4. 역구매자금결제제도(판매기업중심)를 이용하는 경우에 구매기업에 기인하는 사유로 인해 대출이 실행되지 않아 발생하는 손해
 - 5.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태가 발생한 경우 또는 은행에 전산장애가 발생하였거나 인터넷 등에 장애가 발생하는 등 불가피한 사유로 추심의뢰 또는 대출실행이 되지 않아 발생하는 손해
- ② 본 약정과 관련하여 별도로 명시하지 아니한 은행의 손실부담 및 면책은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 제20조(손실부담 및 면책)에서 정한 바에 따르기로 합니다.

제 10 조 (효력)

본 약정과 기업간전자상거래서비스이용약관,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의 내용이 서로 상충되는 경우에는 본 약정이 우선 적용되고, 다음으로, 기업간전자상거래서비스 이용약관,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의 순서로 합니다.

제 11 조 (관할법원의 합의)

본 약정과 관련하여 소송의 필요가 생긴 때에는 법이 정하는 관할법원과 아울러 은행의 본점, 지역본부 또는 본인의 거래 영업점의 소재지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.

제 12 조 (기타 특약사항)

	본인	(인)
--	----	-----

20 년 월 일

본 인 : _____ (인)
주 소 : _____

